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00,872,561	24,026,177
일반회계	725,644,896	21,769,347
특별회계	75,227,665	2,256,830
공기업특별회계	63,417,288	1,902,519
상수도공기업	35,153,979	1,054,619
하수도공기업	28,263,309	847,899
기타특별회계	11,810,377	354,311
의료급여기금운영	761,456	22,84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689,702	20,691
농공지구조성사업	6,327,744	189,83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5,182	29,855
수질개선	594,598	17,838
주택사업	2,052,856	61,586
기반시설	16,695	501
장기미집행	372,144	11,16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695,793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8,0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